

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-2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8. 2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안산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. 12. 31.자로 종료됨에 따라
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」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위탁내용

- 시 설 명 :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
-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- 소 재 지 :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2(고잔법조빌딩 509호)*
*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준공 이후 사무실 이전 예정(2023년 상반기)
- 시설규모 : 152.06m²
- 위탁사무 :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
나. 운영현황

- 설치시기 : 2007. 9. 1.
- 위탁단체 : 안산기독교청년회
- 위탁기간 : 2008. 1. 1. ~ 2022. 12. 31.(15년)
- 주요사업 :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공모사업 및 교육사업 등
- 운영인력 : 7명(센터장1, 사무국장1, 팀장3, 직원2) ※센터장 : 비상근
- 예 산 : 700,000천원(2022년)

다. 필요성

- 마을만들기 인재 육성, 지역 공동체 형성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(단체) 등에 위탁 필요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 1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」 제29조(관리 및 운영)
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민간위탁 사무)
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예산수반사항 : 붙임 2

- 비용추계서

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: 붙임 3

방침결정문 : 붙임 4